

**2011.05.23 미래정책연구실**

※ 본 자료는 5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인증제 개정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**□ 녹색인증제 개요**

- (목적)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녹색산업 분야 대상 기술·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,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
- 정의
  - (녹색기술) 온실가스 감축기술,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, 청정생산 기술, 청정에너지 기술,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(관련 융합기술을 포함) 등 사회·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는 기술
  - (녹색사업) 녹색산업설비·기반시설의 설치·공사, 녹색기술·산업의 응용·보급·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
  - (녹색전문기업)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 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% 이상인 기업
- (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인증 실적) 녹색기술 20, 녹색전문기업 3 총 23건
  - 식물공장 LED 조명기술 등 친환경 농식품(10건),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개발 등 환경보호 및 보전(6건), 농업용수 정화 및 재활용 기술 등 첨단 수자원(3건), 저소음 전기어선 등 그린 차량(2건), 생물 등 천연유래 비료 등 신소재(2건)

**□ 주요내용****1. 녹색사업 인증 신청자격 확대**

- 생산시설 신·증설, 제품·설비 생산라인 구축,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등 프로젝트 외에도 녹색사업의 범주로 인정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신청자격 인정
  - ※ 다만, 기업의 제품생산·판매 등 일상적인 비즈니스 및 설비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히 신기술 등을 적용한 공정개선은 현행과 같이 사업인증 대상에서 제외

**2. 인증대상 범위 확대 및 추가**

- (녹색기술 분야) 기존 녹색기술 10대 분야, 61개 중점분야(중분류)에 태양열, 지열, 핵융합, 콘텐츠, 바이오의약 등 24개 중분류 추가·확대
  - 콘텐츠, 바이오의약 등 저탄소화에 기여하는 지식기반 산업기술 및 지식 기반산업기술외에도 태양열, 지열, 이차전지, 해양생명공학 등 사회적 니즈가 높은 분야까지 인증 대상 확대
- (녹색사업 분야) 기존 95개 사업에서 지열에너지, 고효율화 공정설비, 방송 통신, 콘텐츠 보급 등 10개 사업 추가·확대

**3. 녹색기술, 녹색사업 인증기준 개정**

- 녹색기술의 경우 인증평가 항목 중 시장성(30점) 부분을 삭제하고, 기술 우수성(40→60점), 녹색성(30→40점) 배점 확대
- 녹색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(20점) 평가항목의 명칭을 정책적합성(20점)으로 변경하고, 관련 세부지표를 조정
- 시장성 등 불필요한 평가를 최소화하고, 특히, 금융권 여신심사와 중복소지 제거를 통해 녹색인증 활성화 유도

- 녹색사업 평가항목의 세부지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명칭변경

#### **4. 녹색기술 기술수준 개정**

- 인증대상 녹색기술의 확대에 따라 해당 핵심(요소)기술 및 기술수준을 신규로 마련
  - 도입기 기술 등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격차가 큰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수준을 완화 및 구체화